

● 제286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4. 29.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06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양민규 의원(김태수 의원 외 13명 찬성)
- 나. 제안일 : 2019. 3. 27.
- 다. 회부일 : 2019. 3. 2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위촉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 위상을 높이고 서울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안됐음.

2 조례안 제정 필요성과 목적(안 제1조)

-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는 의회에 대한 서울시민(이하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주요 의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의회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 중임(표-1).

<표-1> 의회 홍보대사 운영 상황

대수	홍보대사	직업	활동기간	주요 활동
7대	임성훈	MC	2009.10.30.~ 2010.6.30. (8개월)	홍보 CF 출연
	이선희	가수		-
	이 훈	탤런트		-
8대	미운영			
9대	김현욱	전 아나운서	2014.10.29.~ 2018.6.30. (3년 8개월)	홍보 광고 출연 (TV, 라디오)
	김혜진	연예인, 화가		
10대	장민우	캐나다 밴쿠버 한인회 이사장	2018.11.14.~ 2022.6.30.(예정) (약 3년 8개월)	-

- 의회 홍보대사 운영 제도는 의정을 널리 알리고 의회의 대·내외적인

위상을 강화하는 다양한 홍보 방법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운영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방침으로 운용함으로써 홍보 활동 기간과 범위 등이 일정하지 못한 채 상황에 맞추어 운영돼왔음.

- 따라서 의회 홍보대사 위촉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홍보대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안된 제정안은 그 목적과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안 제1조는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조례안의 제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의회 홍보대사 운영 목적이 의회와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임을 고려해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표-2).

3 의회 홍보대사 임무(안 제2조)

- 안 제2조제1항은 의회 홍보대사의 임무를 ①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②의회 홍보와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③의회 주관 각종 축제와 행사에 관한 사항 ④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⑤이 밖에 의회 홍보를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홍보대사의 역할은 홍보를 위한 홍보물에 출연하거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이뤄지는바, 안 제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임무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의회 홍보 전반에 관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입법 취지에 맞게 홍보대사 임무의 범위를 실질적인 홍보 역할로 좁혀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표-2).
- 이 밖에 같은 조 제2항은 의장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수행하는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음.

- 이는 특정 사업을 추진할 시 이를 홍보하는데 적합한 사람이나 단체를 홍보대사로 위촉·운영해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특정 임무만을 수행하는 의회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할 경우 그 임무 또는 사업 추진 기간에만 활동할 수 있도록 임기를 조정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임.

4 의회 홍보대사 위촉, 운영, 위촉 해제, 예우, 시행규칙(안 제3조~제7조)

- 안 제3조와 제4조는 홍보대사의 자격과 임기, 운영 방안을 정하고 있고, 안 제5조는 임기 중 홍보대사 해촉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의회 홍보대사가 의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시민에게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에 부합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회 홍보대사로 위촉해 활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바, 제정안에서 위촉 자격과 해촉 기준을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의회 홍보대사가 임무 수행 시 필요한 예우의 범위와 근거 등을 명시하고, 의회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3항)으로써 의회 홍보대사 활동에 원활함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안 제4조는 의회 홍보대사 위촉과 운영 시 담당 부서를 정하고 (제1항), 매년 1회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 의회 홍보대사에게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했음(제2항).
- 홍보대사의 주요 업무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고 그동안 위촉된 홍보대사가 대부분 유명 방송인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정기회의를 운영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데,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열어 자문을 구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표-2).

- 안 제7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했으나, 의회 홍보대사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임무와 비용 지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유연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홍보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세부 홍보 사업에 따라 내부 방침 등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표-2).

<표-2> 제정안 수정 의견

제정안	수정 의견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의정 ----- 향상을 -----.</p>
<p>제2조(임무) ①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의회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생략)</p>	<p>제2조(임무) ①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홍보 활동 2. ----- 출연 등 3. ----- 참석 등 4. <삭 제> 5. (제정안과 같음) <p>② (제정안과 같음)</p>
<p>제3조(위촉) ① (생략)</p>	<p>제3조(위촉) ① (제정안과 같음)</p>

제정안	수정 의견
<p>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후단 신설></p> <p>제4조(운영) ① (생략)</p> <p>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u>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u> 개최하여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p> <p>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 ----- <u>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u></p> <p>제4조(운영)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 ----- <u>필요한 경우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회의를</u> ----- -----.</p> <p><삭제></p>

5 종합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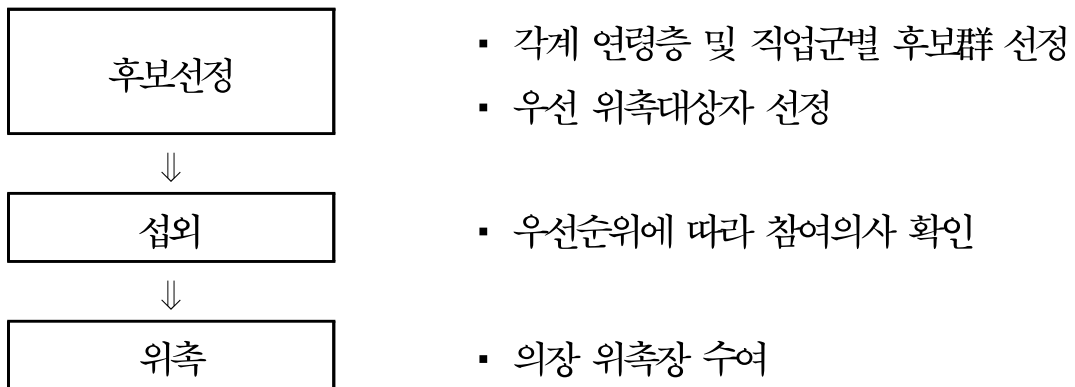
- 본 제정안은 그동안 일정한 기준 없이 위촉·운영해온 의회 홍보대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목적과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의회 홍보대사 운영 목적이 의회와 의정을 홍보하는 것임을 조례상에 정확히 명시하고, 임무의 범위를 실질적인 홍보 역할로 좁혀 의회 홍보대사 운영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홍보대사 모두가 참석해야 하는 정기회의를 열기 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열어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 홍보 사업에 따라 조율해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의회 홍보대사 운영은 의원의 의정활동과 의회 홍보를 활성화 하고 그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임을 감안해, 홍보대사 운영 담당

부서는 형식적인 홍보대사 위촉과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의정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서울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현황

- 운영 취지 : 서울시의회의 이미지 제고와 주요 의정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덕망 있는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
- 위촉 임기 : 4년 원칙, 예외적 기간 단축 운영(1년)
- 선정 방향
 - 대중적 인지도가 있고, 의정의 주요사업 홍보에 적합한 유명인
 - 의회 이미지에 적합한 유명인
 - 주요 의정 행사의 참여도를 확보할 수 있는 유명인
 - 그 밖에 의정에 관심이 많고 시의회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선정 절차



○ 홍보대사 활동

- 협의를 통한 의회 홍보물 제작 시 참여, 주요 행사 초대 등
- ※ 제7대 홍보대사(임성훈), 제9대 홍보대사(김현욱, 김혜진) 홍보 광고 출연





○ 홍보대사 보상

-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함. 단 홍보물 제작 참여 등에는 소요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제공(출연비)

□ 운영상 문제점

- 의회는 사업부서가 아니므로 홍보대사를 활용한 홍보 방안이 이미지 광고 출연 등으로 제한적임.
- 의회라는 특성으로 인해 이미지를 중요시 하는 연예인 섭외에 어려움 상존

※ 역대 홍보대사

대수	이미지	성함	생년월일	위촉일	활동기간	주요활동
10대		장민우 (캐나다 벤쿠버 한인회 이사장)	1965.10.4.	'18.11.14. (서울기 운영위원장 추천)	'18.11.14. ~'22.6.30.	-
9대		김현욱 (前아나운서)	1972.9.17.	'14.10.29.	'14.10.29. ~'18.6.30.	홍보 광고 출연 (tv 및 라디오)
		김혜진 (연예인, 화가)	1975.4.16.			
8대	없음					
7대		임성훈 (MC)	1950.7.28.	'09.10.30.	'09. 10. 30. ~ '10. 6. 30.	홍보 CF 출연
		이선희 (가수)	1964.11.11.			-
		이훈 (탤런트)	1973.5.6.			-

□ 검토 보고

- 의회의 홍보예산이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다양한 영상 제작 및 홍보방안이 마련되고 있어 추후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을 시 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하게 활용가능.
- 또한 서울시의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홍보대사를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활동 보장 및 의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에 기여.
- 다만, 연예인 섭외 시 시의회라는 정치적인 공간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것이 본인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는 경우, 대상자 섭외에 어려움 예상됨.

□ 조례(안) 검토보고

- **조례명 :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506)**
 - 발의연월일 : 2019년 3월 27일
 - 발 의 자 : 양민규 의원(1명)
 - 찬 성 자 : 김태수, 김수규, 임종국, 최 선, 문장길, 이은주, 송명화, 이병도, 오중석, 한기영, 채유미, 권순선, 황인구, 전병주 의원(14명)
- **부서의견**
 - ① 제1조 : **오탈자 수정**
 -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의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② 제2조(임무) 1항 4호 :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에 관한 사항
<수정>
 - 의회 주관 축제가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되어 삭제 요청

③ 제3조(위촉) 1항 2호 : 의회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수정>

- 민주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는 의회의 가치는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가치라는 표현보다 “사회적 가치”라는 상위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④ 제7조(사행규칙) 이 조례의 사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 별도 규칙으로 정할만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비용 지출 및 홍보대사의 활동사항은 세부 사업에 따라 방침으로 결정

[붙임1]

서울시청 홍보대사 운영현황

□ 홍보대사 운영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운영 : 각 사업 및 행사 관련 주최 과에서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홍보대사 섭외요청.
 - 사례금 지급은 관련 주최 측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조례 제6조)
 - 비용기준 : 시민소통담당관 별도 방침으로 지급 기준 근거 마련

구분	영상물 모델	포스터 등 인쇄물 모델	사업 행사 참여
사례금 (만원)	800~	500~	200~

※사례금 지급 : 상호 협의 후 결정 가능

□ 2019년 서울시 홍보대사 현황

(’19년 3월 현재)

배우 (9명)	최불암, 권해효, 이광기, 김나운, 박진희, 이일화, 이하나, 장현성, 한예리
방송인 (9명)	샘&윌리엄 해밍턴, 김미화, 박수홍, 장도연, 사유리, 정찬우, 김태균, 알베르토 몬디, 다니엘 린데만
가수 (5명)	지코, 유라, (여자)아이들, 신대철, 스위트소로우
전문가 (15명)	장윤주(모델), 김현정(한국화가), 유현준(건축가), 정샘물(메이크업아티스트), 최현석(요리연구가), 송지오(패션디자이너), 이연경(아나운서), 박지호(작가, 편집장), 명민호(일러스트레이터), 정건영(음악가), 홍혜걸(의학전문기자), 여에스더(의사), 조세현(사진작가), 강주배(만화작가), 양태오(인테리어디자이너)